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43
----------	-----

2024. 4. 30.(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호경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4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11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4월 24일

-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호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 (김홍식 수석전문위원)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 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인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해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교습학원, 체육시설, 산업단지 등의 관리기관과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의 통근·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도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속함.
-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 있고, 이 범위에 전세버스도 포함됨.
- 우리 도는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를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3조(재정지원의 대상)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음.

- 한편 충북전세버스운송조합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8,000여 건이던 전세버스 운행기록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10,000여 건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2023년에도 48,000여 건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이 같은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현황을 고려 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본 조례안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를 두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3조는 조례의 지원 대상을 도내 시장·군수에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함.
 - 안 제4조는 영상기록장치, 운행기록장치, 자격유지검사 등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5조는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
- 그 밖의 조문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4. 4. 12 ~ 4. 18.)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본 조례안은 총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문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조례 시행에 따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추계한 결과, 연간 52,000천원(5년 총 260,000천원)으로 재정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 보수교육 지원 사업(안 제4조 4호), 좌석안전띠 설치 지원 사업(안 제4조 6호)은 각각 충북교통연수원에서 도내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해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관련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로 비용 추계에서 제외 되었으므로,
- 향후 지원 사업의 추진 시 해당 지원 사업의 지속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됨.

4. 검토의견

-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영상기록장치, 운행기록장치, 자격유지 검사 등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 검토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소관부서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중복되는 지원 사업이 현재 시행 중이어서 비용추계에서 제외된 항목에 대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여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전세 버스운송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제 1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 전세버스운송 사업을 하는 자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영상 기록장치의 설치 사업
3.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장착하여야 하는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사업
4. 법 제25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지원 사업

5.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65세 이상 전세버스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자격유지검사 지원 사업
6.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전세버스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6항에 따른 좌석안전띠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다.

②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